

의안번호	2215597
의 퇴 인	전종덕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 계 번호	25B7163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 제공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돌봄관리기관이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5,200만원, 2031년 1,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700만원(연평균 1,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안 제39조제1항)	41	—	—	—	—	41	8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 (안 제40조)	11	11	11	11	11	56	11
추가재정소요	52	11	11	11	11	97	19

-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된 문제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등 노동조건 향상 및 근로시간면제 등 노동3권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및 기금에 반영하고,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사용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할 돌봄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 봄	의무규정
3	안 제7조(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평등 대우)	외국인 돌봄노동자는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언어,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내국인에 비하여 차별받지 아니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기간제 근로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돌봄 관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의무규정
5	안 제9조(이용자의 입원 등으로 인한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출국 등을 이유로 돌봄노동자를 해고, 전직, 감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못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돌봄노동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돌봄노동자에게 교체 사유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근로계약에서 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출국 및 교체요구 등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이 계약 부분은 무효로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이용자의 입원 등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등)	사용자는 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출국 및 교체 요구 등으로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되거나 돌봄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지원을 위한 비용을 예산 및 기금의 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1조(퇴직급여)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돌봄노동자에게 근무 기간에 비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12조(돌봄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 등)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이하 “돌봄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돌봄임금의 시간당 기본급은 돌봄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수준(이하 “돌봄임금 최소수준”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돌봄노동자의 근로계약 중 제2항에 따른 돌봄임금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돌봄임금 최소수준을 기본급으로 정한 것으로 봄(제3항)	의무규정
		돌봄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와 독립하여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함(제4항)	의무규정
		제4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운영비 등과 구분하여 돌봄제공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돌봄임금 전용계좌로 임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돌봄제공기관은 임금 지급 후 돌봄노동자의 이름과 지급 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돌봄임금 지급내역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급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제5항)	의무·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3조(경력 인정)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경력에 따른 기본급 차이는 동일 사업 내 초임 돌봄노동자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음(제2항)	의무규정
		돌봄노동자의 경력 인정 기간은 사용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돌봄 업종의 돌봄 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연도 단위로 산정하되, 산정 기준과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2조제2호 하목에 정한 돌봄노동자 및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돌봄제공플랫폼을 통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경력은 각 사용자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존속한 기간으로 봄(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14조(월급제 적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월급제를 적용하는 돌봄제공기관은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12배로 기본연봉을 책정하고, 기본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일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15조(실비변상)	사용자는 교통·통신비 등 돌봄노동자의 노무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변상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16조(소정근로시간 보장 등)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17조(인수인계 시간 등의 근로시간 산입)	돌봄노동자가 업무의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이용자의 상태와 돌봄 계획 등을 전달받거나 전달받는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제1항)	의무규정
		돌봄노동자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 및 돌봄의 내용 등을 알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제2항)	
14	안 제18조(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방문 돌봄노동자(이용자를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한 돌봄 제공장소에서 다른 돌봄 제공장소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해당 일의 근로시간에 산입함. 이동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산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19조(교육 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전문 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 12시간 이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봄	의무규정
16	안 제20조(야간 근로)	야간근로가 3시간 이상 포함된 날의 돌봄노동자의 전체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1항)	의무규정
		돌봄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제2항) 1.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야간에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또는 혼인의 실질을 가진 합의를 따른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모 또는 조부모 나. 배우자, 형제자매 다. 본인 또는 나목의 사람의 자녀, 입양자녀 또는 손자·손녀 라.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받아 보호하는 아동 마. 그 밖에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	의무규정
		사용자는 제2항의 요청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3항)	의무규정
17	안 제21조(시설 돌봄노동자의 휴게 보장)	사용자는 시설 돌봄노동자(사용자가 돌봄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용자의 지시나 호출에서 자유로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시설 돌봄노동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분리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필요한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및 기금의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필요한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및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8	안 제22조(방문 돌봄노동자의 휴게 보장)	사용자는 방문 돌봄노동자의 이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함을 고지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문 돌봄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의 장소에 안전한 방문 돌봄노동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9	안 제23조(방문 돌봄노동자의 유급 휴게 보상)	단독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 돌봄노동자가 이용자의 연령이나 장애로 인하여 안전관리 필요상 돌봄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봄노동자의 사전 서면 동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휴게시간을 유급 휴게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휴게시간을 유급 휴게 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유급 휴게 보상은 4시간 근로 시 30분, 그 후 근로시간 1시간마다 10분씩의 임금 상당액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돌봄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0	안 제24조(유급 연차휴가)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제1항)	의무규정
		유급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경력 인정 기간 산정 기준과 방법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함(제2항)	의무규정
21	안 제25조(안전 휴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노동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 안전휴가를 주어야 함 1. 돌봄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감염병이 있거나 우려되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2. 돌봄노동자가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3. 돌봄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2	안 제26조(병가)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병가 사용을 요청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 또는 대체인력 제공이나 그 비용 부담을 강제할 수 없음(제4항)	의무규정
23	안 제27조(휴가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알선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정한 각 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알선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4	안 제28조(노정 교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이하 “노동조합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제1항) 1. 전년도 업종별 돌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재원(이하 “재원”이라 한다)이 「국가재정법」 제4조의 회계 또는 같은 법 제5조의 기금, 「지방재정법」 제9조의 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의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2. 돌봄임금,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근로시간 확보 및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대표자(이하 “노정교섭대표”라고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재원의 구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제1항제1호의 재원이 국가 회계 또는 기금만으로 구성된 경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제30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2. 제1항제1호의 재원이 국가 회계 또는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으로 구성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3. 제1항제1호의 재원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으로 구성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4. 제1항제1호의 재원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또는 기금만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규정
		노동조합등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노정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노정교섭대표는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등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 등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노정교섭대표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등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함(제5항)	재량·의무규정
		노정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노동조합등과 노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노정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등이 교섭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5	안 제29조(노정협약의 효력)	노정교섭의 결과 체결된 노정협약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우선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무효로 함. 다만,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참여한 협의회 또는 특정 시·도와 체결한 노정협약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노사간 단체협약에 우선함(제1항)	의무규정
		노정교섭대표는 노동조합 대표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전국 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노정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노정교섭대표는 노정협약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안, 법령 및 조례 제·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6	안 제31조(사용자단체에 관한 특칙)	돌봄노동자의 사용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능,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로 봄 1. 사용자들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또는 노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거나 기준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행위 3.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의무규정
27	안 제32조(사용자의 공동교섭의무)	사용자는 해당 사업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 또는 돌봄노동자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다른 사용자와 공동교섭을 요구할 경우 다른 사용자와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8	안 제33조(돌봄노동자의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돌봄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봄 1. 이용자를 들어서 옮기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신체활동 지원 업무를 별도의 장비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돌봄노동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동안 제1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의무규정
29	안 제34조(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	사용자는 이용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에게 그 질병명과 전염 가능성을 알리고 예방법을 교육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돌봄노동자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전염성 질환이 전염된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사용자는 즉시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돌봄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30	안 제35조(이용자 등의 괴롭힘 금지)	이용자 등은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돌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2. 돌봄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돌봄노동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4. 돌봄노동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5. 제4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안전 또는 다른 이용자와 사이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학대로 신고하는 행위 7. 돌봄제공기관 또는 돌봄관리기관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이나 신고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의무규정
31	안 제36조(이용자 등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이용자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돌봄 제공을 중단하게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제공을 중단하게 한 경우 이를 즉시 돌봄관리기관에 알리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이용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요청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이용자의 괴롭힘이 이용자의 심신상태로 인하여 반복되는 경우 돌봄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심신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돌봄제공기관을 알선 또는 지정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돌봄노동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2	안 제37조(작업 중지권)	돌봄노동자는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해당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돌봄노동자가 제1항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즉시 돌봄관리기관에 알리고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라 돌봄 제공이 중지되었으나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즉시 돌봄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돌봄관리기관은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등 즉시 대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돌봄노동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4항)	의무규정
33	안 제38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녹음장치 등으로부터 돌봄노동자의 인격권 보장)	사용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하는 돌봄 제공 장소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를 돌봄노동자에게 알려야 함(제1항)	의무규정
		이용자 등은 방문 돌봄노동자의 돌봄 제공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 이를 사용자 및 돌봄노동자에게 알리고 돌봄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이용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봄(제2항)	의무규정
		이용자 등은 방문 돌봄노동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돌봄노동자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제3항)	의무규정
		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4항) 1. 방문 돌봄노동자의 휴게·탈의에 필요한 공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행위 2. 녹음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전달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의무규정
		사용자 및 이용자 등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촬영 영상을 돌봄 중단이나 징계 등에 돌봄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돌봄노동자의 열람 요청이 있으면 분쟁에 관련된 범위에서 해당 촬영 영상을 제공하여야 함.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촬영 영상을 돌봄노동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제5항)	의무규정
		그 밖에 방문 돌봄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제6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4	안 제39조(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안전사고(돌봄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및 돌봄 서비스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돌봄 제공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돌봄제공기관은 돌봄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 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돌봄관리기관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돌봄제공기관 및 돌봄노동자는 돌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돌봄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35	안 제40조(돌봄 노동자 보호위원 회)	돌봄관리기관은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함(제1항)	의무규정
		보호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돌봄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돌봄노동자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에 필요한 조치	의무규정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 다만, 제2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한 성의 비율은 10분의 6을 넘을 수 없음(제3항) 1. 이용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의무규정
36	안 제41조(인권 교육)	사용자 및 돌봄노동자는 이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 보장과 돌봄노동자의 노동 존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제1항)	의무규정
		돌봄관리기관은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하여 이용자 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사용자는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등의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7	안 제42조(통보 의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자가 이 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임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5	안 제6조(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안 제7조(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평등 대우) 안 제8조(기간제 근로계약의 금지) 안 제9조(이용자의 입원 등으로 인한 해고 등의 제한)	—	• 미대상 —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내외국인의 평등 대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금지, 이용자의 입원 등으로 인한 해고 등의 제한 등 고용 조건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10조(이용자의 입원 등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 하여금 휴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휴업수당을 ‘30일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간이 유동적이며,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휴업수당 지급대상자의 규모와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1조(퇴직급여)	—	• 미대상 — 제정안은 사용자¹⁾로 하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돌봄노동자에게 근무 기간에 비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10	안 제12조(돌봄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 등) 안 제14조(월급제 적용)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돌봄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자와 독립하여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이들의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임금을 지급하는 사업대상자의 규모와 이들 중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의무 보장과 관련한 자의 규모 및 이들의 평균임금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및 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9	안 제13조(경력 인정)	—	• 미대상 —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의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1) “사용자”란 돌봄제공기관 및 제5호에 따라 돌봄제공기관으로 보는 돌봄제공플랫폼의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
- 2) ①이용자를 들어서 옮기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신체활동 지원 업무를 별도의 장비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와 ②돌봄노동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동안 중사한 경우
- 3) “돌봄관리기관”이란, 돌봄에 관하여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립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사회서비스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16	안 제15조(실비 변상) 안 제16조(소정 근로시간 보장 등) 안 제17조(인수 인계 시간 등의 근로시간 산입) 안 제18조(이동 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안 제19조(교육 시간의 근로시간 산입) 안 제20조(야간 근로)	—	• 미대상 —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교통·통신비 등 돌봄 노동자의 노무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변상, 소정근로시간 보장, 인수인계·이동시간·교육시간 등의 근로시간 산입 등 노동 조건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7	안 제21조(시설 돌봄노동자의 휴 게 보장)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 돌봄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지 시나 호출에서 자유로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및 기금의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설 돌봄노동자의 휴게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이들의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들의 필요 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 돌봄노동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분리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및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휴게 공간 설치 규모 및 개소수와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8	안 제22조(방문 돌봄노동자의 휴게 보장)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방문 돌봄노동자의 이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함을 고지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문 돌봄노동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의 장소에 안전한 방문 돌봄노동자 휴게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휴게 공간의 설치 규모와 단가 및 이에 대한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9~11	안 제23조(방문 돌봄노동자의 유급 휴게 보상) 안 제24조(유급 연차휴가) 안 제25조(안전 휴가) 안 제26조(병가)	—	• 미대상 -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돌봄노동자의 방문 돌봄노동자의 유급 휴게 보상, 유급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3	안 제27조(휴가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알선 및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에게 유급 연차휴가, 안전휴가, 병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알선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돌봄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의 휴가 사용 규모와 기간 및 이로 인한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24	안 제28조(노정 교섭)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연합단체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연대체(이하 “노동조합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5	안 제29조(노정협약의 효력)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노정교섭의 결과 체결된 노정협약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우선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노정교섭대표로 하여금 노정협약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안, 법령 및 조례 제·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안 등이 달라질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정협약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이에 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6~27	안 제31조(사용자단체에 관한 특칙) 안 제32조(사용자의 공동교섭의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공동교섭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8	안 제33조(돌봄노동자의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요건²⁾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으로 업무상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업무상 질병의 증가 규모와 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지출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9~33	안 제34조(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 안 제35조(이용자 등의 괴롭힘 금지) 안 제36조(이용자 등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 제37조(작업 중지권) 안 제38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녹음장치 등으로부터 돌봄노동자의 인격권 보장)	—	• 미대상 —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사용자 및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4	안 제39조(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	• 추계(제1항)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돌봄제공기관으로 하여금 돌봄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돌봄관리기관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은 돌봄제공기관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3항) — 제정안은 돌봄제공기관 및 돌봄노동자는 돌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돌봄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5	안 제40조(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6	안 제41조(인권 교육)	—	• 미대상(제1항 및 제3항) – 제정안은 사용자 및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 보장과 돌봄노동자의 노동 존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제1항), 사용자로 하여금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기 전에 이용자 등의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2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돌봄관리기관³⁾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하여 이용자 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인권교육대상자의 규모와 관련 교육의 시행 형태 및 교육 기간과 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37	안 제42조(통보 의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이 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안 제39조제1항)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돌봄 안전사고⁴⁾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돌봄 제공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기관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 제공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며, 연구용역 비용은 유사 연구용역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추계
 - 추계기간 동안 용역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1회 제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유사사례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연구

- (주요내용) 시설 유형별로 분권화하고, 시설 유형별 매뉴얼 내에 규모별, 대상자(이용자/관리자)별 순으로 내용 구분하여 활용도 제고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 (용역예산) 3,600만원(2023년)

* (유사사례 2) 해외 산림작업 안전지침 비교·분석 연구용역

- (주요내용) 국내 산림현장에 적합한 산림작업 안전지침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미국 오레건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산림작업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산림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발주기관) 산림청
- (수행기관) 한국산림공학회
- (용역예산) 4,545만원(2023년)

4) 돌봄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및 돌봄 서비스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표 4] 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안 제39조제1항)	41	—	—	—	—	41

주: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안 제40조)

□ 제정안은 돌봄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돌봄관리기관이란, 돌봄에 관하여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조례로 설립한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설치·운영될 돌봄관리기관의 성격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이용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추계서는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수) 14명

* (단가) 안전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⁵⁾하되,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어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5)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표 5]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4	14	14	14	14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1	11	11	11	11	56

주: 1.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돌봄 제공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돌봄관리기관이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1,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돌봄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안 제39조제1항)	41	—	—	—	—	41	8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 (안 제40조)	11	11	11	11	11	56	11
추가재정소요	52	11	11	11	11	97	19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와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